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가단1169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7,414,600원 및 그 중 47,507,755원에 대하여 2021.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7. 3.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3,369,77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13,369,7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02. 3. 24. 주식회사 D와 신용카드이용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였다. 이후 피고 B은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D는 2012. 1. 7. E 주식회사에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2. 1. 11.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E 주식회사는 2016. 5. 20. F 유한회사에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5. 31.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F 유한회사는 2019. 6. 20.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9. 7. 8.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021. 3. 9. 기준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잔액은 17,918,100원(= 원금 4,992,800원 + 이자 12,925,300원)(이하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제1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나. E 주식회사는 2011. 10. 6. 피고 B에게 45,000,000원을 대출이율 연 27.5%, 연체이율 연 33%,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이후 피고 B이 위 대출금을 연체하자 E 주식회사는 2016. 5. 20. F 유한회사에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6. 5. 31.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F 유한회사는 2019. 6. 20.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9. 7. 8.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021. 3. 9. 기준 위 대출채권의 잔액은 159,496,500원(= 원금 42,514,955원 + 이자 116,981,545원)(이하 위 대출채권을 ‘제2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 B의 아버지인 G는 1979. 11.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상속지분 3/9), 자녀인 H, I, 피고 B(각 상속지분 2/9)이 있다.

라.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7. 3. 17. 피고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C이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당시 피고 B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다수의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2017.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J에게 2017. 3.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J는 2021. 1. 20.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2021. 1. 4.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0,164,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L조합장, M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양수금청구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제1, 2양수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양수금 177,414,600원(= 17,918,100원 + 159,496,500원) 및 그 중 원금 47,507,755원(= 4,992,800원 + 42,514,955원)에 대하여 2021.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제1, 2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제1, 2양수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은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I이 식당 동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알았지만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체결된 이후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21. 1. 4.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60,164,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위 금액과 같다고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가액인 13,369,777원(= 60,164,000원 × 피고 B의 상속지분 2/9, 원 미만 버림)과 원고가 구하는 2021. 3. 9.까지의

피보전채권액 177,414,600원(= 제1양수금채권 17,918,100원 + 제2양수금채권 159,496,500원)
중 더 적은 금액인 13,369,77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 C은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3,369,7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훈

별지